

「구미시 경로당 설치 및 개보수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 의 자: 김정도 의원 외 9인

2. 제안이유

○ 과거 국공유지에 경로당을 지어 등록경로당으로 운영 중이나, 현행 조례상 유지보수 및 리모델링의 경우 시장 소유의 토지 경로당에만 지원되고 있어 국공유지 등록경로당임에도 유지보수 등이 지원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코자 함.

또한, 경로당 건축비용이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을 개정하여 관내 어르신들이 보다 깨끗하고 안정된 환경을 영위하는 것에 기여코자 함.

3. 주요내용

- 국공유지 토지매입비 지원 단서조항 신설(안 제5조제3항)
- 지원기준 비용 예산범위 상향(안 제6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제36조, 제37조, 제47조
 -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4조

○ 기 타: 신·구조문대비표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국공유지에 위치한 등록 경로당의 토지매입비 지원 근거 마련과
경로당 신축·증축 등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범위 확대를 통한
어르신복지 향상을 위한 것으로,

○ 검토 결과,

현 행	개 정 안
제5조(지원조건) ①·② (생 략) <신 설>	제5조(지원조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5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 하고 경로당 양지화 사업 등으 로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 토지매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기준) 시장은 경로당 1 개소 당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 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기준) ----- ----- ----- -----.
1. 신축, 재건축 : <u>3억원</u> 이내	1. ----- <u>6억원</u> ---
2. 증축, 리모델링 : <u>5천만원</u> 이 내	2. ----- <u>2억원</u> -----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 **안 제5조 및 안 제6조**는 경로당 지원조건외 확대 및 지원금액 상향조정을 위한 것으로, 「노인복지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국공유지뿐만 아니라 개인 또는 마을에서 소유중인 무허가 경로당의 양지화 사업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임.
- 집행기관에서는 상향된 지원 예산범위에 따른 적절한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구미시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을 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임.